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22029
-------------	-------

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의자 : 서삼석 · 이개호 · 한준호

소병훈 · 서동용 · 김승남

이상현 · 임호선 · 주철현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신品种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불법으로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요·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후단 신

설 및 안 제41조 제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5호 중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거나 판매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 · 수입 판매 <u>신고</u>)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 ⑤ (생 략)</p> <p>제41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생 략)</p> <p>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u>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u>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 · 수입 판매 <u>신고 등</u>) ① --</p> <p>---. <u>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 · 수입 · 소지 · 유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1조(별 칙)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 <u>생산 · 수입 · 소지 · 유통 · 보관하거나 판매한 자</u> -----</p>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